



문서번호	문화체육과-15280
결재일자	2015.7.1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313호

주무관	문화관광팀장	문화체육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
김진숙	정형래	이현식	김종순	07/17 이비오
협조				

# 성동문화재단 규정 제정(안) 승인



**성 동 구**  
**(문화체육과)**

# 사 전 검 토 사 항

∴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구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/ul>
여 성 친 화 도 시	성 평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· 편 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가 족 · 공 동 체 회 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성 참 여 <input type="checkbox"/>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환 경 영 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유 지 비 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 른 공 공 언 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 약 계 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 등 발 생 요 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 자 원 활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/ul>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DT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뉴스레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구소식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행정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리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홍 보 제 목 :</li> <li>● 중 점 홍 보 사 항</li> <li>-</li> <li>-</li> </ul> <p>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p>	

# 성동구 문화재단 규정 제정(안) 승인

성동구 문화재단에서 지난 7. 15.(수)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후, 승인요청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하기에 이를 승인하고자 함.

## I. 개 요

###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
-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정관 제46조

### 승인요청 안건 : 7건

의안번호	의 안 제 목	주요내용
제6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인사 규정(안)	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규정, 공정한 인사관리 기반 마련
제7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취업 규정(안)	직원의 근무조건 및 취업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
제8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(안)	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조건 및 취업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
제9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(안)	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
제10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보수 규정(안)	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규정
제11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복리후생 규정(안)	임직원의 복리후생과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보상 관련 사항 규정
제12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(안)	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규정

※ 의안 제13호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(안)은 기구, 정원, 임직원 채용·면직·보수·복리후생, 재산 관련사항이 아니므로 승인 대상에서 제외

요 청 일 : 2015. 7. 16.(목) ※ 이사회 의결일 : 2015. 7. 15.(수)

## II. 검토내용

### 1. 의안 제6호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인사 규정(안)

- 제정이유 :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제정
- 근거 : 근로기준법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주요내용
  - 이사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가짐(안 제6조)
  -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함(안 제7조)
  - 2년 이상 근무 직원은 정기 또는 수시 순환보직 실시(안 제17조)
  - 직원의 승진은 결원 범위내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실시(안 제22조)
  - 인사관리 적정성을 위해 직원 근무평정 실시하며, 그 결과는 승진·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 및 연봉책정에 반영함(안 제26조)
  - 직원은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직, 면직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(안 제27조)
  - 재단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둠(안 제39조)
  - 직원의 징계는 해당사유 발생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(안 제52조)
  - 공단에서 승계된 직원은 근속년수 및 직급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며, 직종은 재단의 기준에 따라 적용함(안 부칙 제2조)
- 검토의견 : 승 인
  - 고문변호사, 노무사와 사전 검토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
  - 다만, 제33조(휴직기간) 제7호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등 간호를 위한 경우 휴직기간이나, 제42조(소집, 의결) 제4항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의 경우 세부 기준이 필요하므로
  - 근시일내 별도 세부 내규를 마련

## 2. 의안 제7호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취업 규정(안)

- 제정이유 : 재단 직원의 근무조건 및 취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으로 마련하고자 함.
- 근거 : 근로기준법, 남녀 고용평등 및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
- 주요내용
  - 직원은 관계법령과 조례,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(안 제6조)
  -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, 향응제공 등의 금지(안 제9조)
  - 고의, 과실로 인해 재단에 피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(안 제11조)
  - 주휴일(일요일), 근로자의 날, 재단출범기념일,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 휴일로 함(안 제20조)
  - 휴가는 연차휴가, 공가, 병가, 특별휴가로 구분(안 제22조)
  - 직원퇴직사유 발생시 30일전 퇴직예고를 해야함(안 제46조)
  - 직원에 대한 제교육 훈련을 행함(안 제50조)
  - 업무상 부상, 질병, 사망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(안 제53조)
  - 법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장(안 제55조)
  -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또는 성희롱 행위 등 금지(안 제61조)
  -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1회 이상 실시(안 제62조)
  -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인사조치 병행(안 제63조)
- 검토의견 : 승 인
  - 고문변호사, 노무사와 사전 검토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
  - 다만, 제36조 규정상 당직비상근무 관련 세부사항과 제64조 규정상 고충처리 관련 절차나 방법이 불분명하므로
  - 근시일내 별도 세부 내규를 마련

### 3. 의안 제8호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무기계약직 관리규정(안)

○ 제정이유 :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취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

○ 근 거 :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

○ 주요내용

- 무기계약근로자의 등급은 “가급”부터 “바급”으로 함(안 제5조)
- 정원은 “별표2”와 같으며 “라급”이하 정원은 통합 운영(안 제8조)
-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시 3개월간 수습 임용(안 제15조)
-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는 수습기간 종료전까지 1회이상 실시(안 제16조)
- 근로자의 정년은 63세로 함(안 제18조)
-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성실의무, 복무의 의무, 품위유지 의무, 비밀엄수의 의무, 청렴의 의무, 부작위 의무, 비상시 협력의 의무 등 부여(안 제25조 ~ 제32조)
-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시 보수 10% 감액(안 제36조)
- 보수는 1년 단위로 2퍼센트씩 가산하여 산정하되, 해당직급의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(안 제40조)
- 공단에서 고용 승계된 사람은 보수 수준을 공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근속년수는 공단의 근속년수를 포함하여 산정(안 부칙 제2조)

○ 검토의견 : 승 인

- 고문변호사, 노무사와 사전 검토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고, 도시관리공단 등 다른 구 산하기관 유사 규정과 큰 차이가 없음.

#### 4. 의안 제9호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(안)

---

- 제정이유 :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
- 근거 : 근로기준법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국민연금법, 산업안전보건법, 산업재해보상보호법
- 주요내용
  -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계획 작성 후 임용권자의 승인 후 채용(안 제6조)
  - 근무연령은 만70세로 함(안 제10조)
  - 보수는 당해 연도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가격을 준용하여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(안 제29조)
  - 수당은 보수규정을 준용하되, 예산 범위에서 조정 지급(안 제30조)
  - 재단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안전한 조치 강구(안 제47조)
  - 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」에 따라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근로금지 및 제한(안 제50조)
  - 공단에서 고용 승계된 사람은 보수 수준을 공단과 동일하게 적용(안 부칙 제2조)
- 검토의견 : 승 인
  - 고문변호사, 노무사와 사전 검토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고, 도시관리공단 등 다른 구 산하기관 유사 규정과 큰 차이가 없음.

## 5. 의안 제10호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보수 규정(안)

- 제정이유 : 임·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
- 근거 : 근로기준법,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
- 주요내용
  - 대표이사의 연봉계약은 성동구청장과 체결하며, 직원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함(안 제5조)
  -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으로, 전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책정(안 제17조)
  - 승진 시 기본 연봉에 5% 인상률을 반영하여 조정(안 제18조)
  - 기준기본급에 자연증가율과 정책인상률을 합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(안 제19조)
  - 수당의 종류, 지급범위, 기타 수당지급은 “별표4”와 같음(안 제20조)
  - 근속기간 1년 이상 임직원에 대해 해당 사유 발생 시 퇴직급여 지급(안 제25조)
  - 업무상 부상, 질병, 사망으로 퇴직 시 퇴직금 가산 지급(안 제27조)
  - 근속년수는 임명한 날부터 계산하여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어 일할 계산(안 제29조)
  -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가능(안 제30조)
  -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간 단체협약서에 의한 합의사항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시행(안 부칙 제2조)
- 검토의견 : 승 인
  - 고문변호사, 노무사와 사전 검토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
  - 다만, 제3조 1호 다목과 제19조 제1항 규정상 기본가산급 계산시 자연증가율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여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
  - 근시일내 이와 관련 별도 세부 내규 마련



## 6. 의안 제11호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복리후생 규정(안)

- 제정이유 :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
- 근거 : 근로기준법, 국민체육진흥법, 산업재해보상보호법
- 주요내용
  - 상근임원, 사무직, 사서전문직, 공연전문직, 기술직, 현업직,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 적용(안 제2조)
  - 임직원에 대한 건강 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함(안 제4조)
  -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자녀학비보조비, 건강진단비, 체력단련행사비, 명절격려품, 생일축하선물, 근로자의 날 격려품, 특근매식비, 콘도 시설 사용료, 선택적 복지비, 직원동호회 등 복리후생비 지급(안 제7조)
  - 임직원에게 필요시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지급(안 제9조)
  - 임직원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보조(안 제10조)
  - 국민 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직원 체육 진흥(안 제11조)
  - 임직원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보상(안 제13조)
  - 제반 복리후생 실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(안 제14조)
- 검토의견 : 승 인
  - 고문변호사, 노무사와 사전 검토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고, 도시관리공단 등 다른 구 산하기관 유사 규정과 큰 차이가 없음.

## 7. 의안 제12호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(안)

- 제정이유 :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
- 근거 :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
- 주요내용
  -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름(안 제3조)
  - 회계에 관해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회계관직을 지정함(안 제5조)
  -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은 관련 법률에 따름(안 제7조)
  - 예산은 매년 10월말까지 작성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(안 제13조)
  - 고정자산의 내용연수, 상각률, 그 밖에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따름(안 제42조)
  - 자본은 자본금, 잉여금, 자본조정계정으로 하고 구성항목은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 따름(안 제44조)
  -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및 회계감사를 받은 후 3월말까지 제출(안 제51조)
  -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(안 제57조)
  -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함(안 제65조)
  - 재단과 관련된 사업으로 공단에서 시행한 원인행위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재단에서 승계함(안 부칙 제2조)
- 검토의견 : 승 인
  - 고문변호사, 노무사와 사전 검토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
  - 다만, 이사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제25조 제2항 규정상 소액지급 한도액 규모나 제27조 규정상 선급금 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
  - 근시일내 재무회계 관련 별도 세부 시행세칙을 마련

### Ⅲ. 종합 검토의견

재단의 제 규정은 그간 재단설립 TF 심의, 고문변호사·공인노무사 등 자문, 창립총회, 이사회 등을 거쳐 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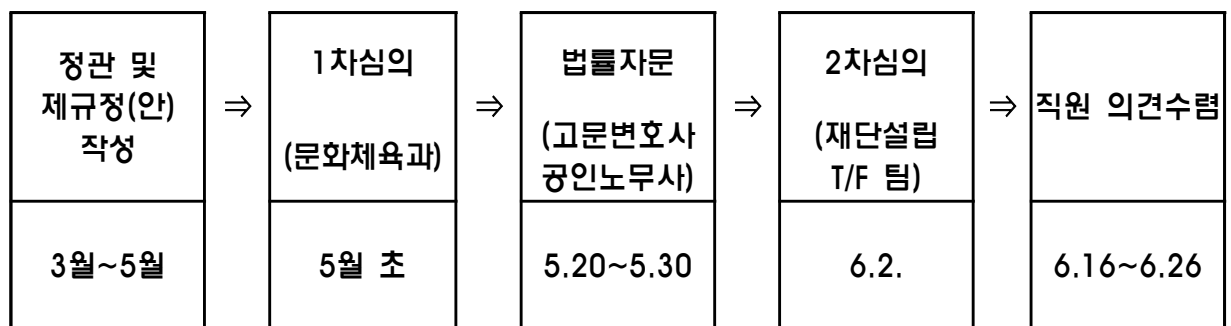
○ 창립총회시 제정(2015. 6. 5.) : 정관 등 5개 규정

- 정관,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, 이사회 운영규정, 공인규정, 직제 및 정원규정

○ 제1회 이사회 심의(2015. 7. 15.) : 8개 규정

- 인사규정, 취업규정, 복리후생규정, 보수규정, 무기계약직 관리규정, 기간제 및 단시간 관리규정, 재무회계규정, 사무위임전결규정

#### 【 규정 제정 절차 】



따라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쳤고,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수정없이 승인

○ 이사회에서 지적되었듯이 일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인사규정 등 4개 규정에 대해서는 근시일내(1달 이내) 별도 세부 내규를 마련, 시행 하도록 요청

향후 규정 제·개정시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므로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이사회 상정 전 구청 소관부서와 사전협의토록 조치 예정

## IV. 최종 승인(안)

의안번호	의안제목	승인사항
제6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인사 규정(안)	승인
제7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취업 규정(안)	승인
제8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(안)	승인
제9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(안)	승인
제10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보수 규정(안)	승인
제11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복리후생 규정(안)	승인
제12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(안)	승인

붙임 : 재단 이사회 부의안 1부. 끝.